

	보도자료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12.22.(화)
기 관	책 임 자		담 당 자	
금융위원회	기업회계팀장	김선문 (02-2100-2690)	허남혁 주무관 (2695)	
금융감독원	회계조사국장	홍순간 (02-3145-7290)	이승민 팀 장 (7313)	

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금융위원회는 12월 22일 제22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하여,
 -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,483.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
 - ※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11월 25일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.

* 11월 25일 보도자료 <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>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	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0.11.25. 의결)

(제22차 금융위원회, 2020.12.22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씨씨에스충북방송</p> <p>결산기 :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12.31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유선방송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(’14년 4,880백만원, ’15년 4,360백만원, ’16년 3,840백만원, ’17년 3,32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 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가공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</p> <p>-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고, 매입 부가가치세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영업권 과대계상 (’14년 2,068백만원, ’15년 3,541백만원, ’16년 3,523백만원, ’17년 2,10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’14~’15년중 특수관계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지역 유선사업자 영업자산을 매입당일 또는 단기간에 동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,</p> <p>- 가입자당 경제적 가치가 단기간에 상승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수관계자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금액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함으로써, ’14년~’17년 재무 제표상 영업권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③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(’14년 171백만원, ’15년 578백만원, ’16년 1,36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비 지급 시 통상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결과,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④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(’14년 9,669백만원, ’15년 15,312백만원, ’16년 5,683백만원)</p> <p>- 회사의 前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특수 관계자와의 용역거래 및 유무형자산 취득거래 등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기재하지 않음</p> <p>⑤ 증권신고서 거짓기재</p> <p>- 회사는 ’17.9.19.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19기(’15년), 제20기(’16년) 재무 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 1,483.8백만원 (前대표이사 : 16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검찰고발 (회사, 前 대표이사 등 3인)</p> <p>※ 前대표이사 해임권 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